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

[광주고법, 1968.6.13, 68노94]

【판시사항】

법정에서의 증언보다 검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더 있다는 사례

【판결요지】

증인이 피의자로서 조사받고 있는 사정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면전인 점등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은 점등을 고려하면 법정에서의 증언은 검찰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에 대한 정황적 보장이 없다 할 것이다.

【참조조문】

형법 제308조
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 손학구

【항 소 인】 검사

【주문】

】 원심판결을 파기한다. 피고인을 벌금 10,000원에 처한다.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돈 2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【이유】

】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공소사실과 부합되는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검사의 증인 허만옥, 임임남에 대한 진술기재내용은 믿지 않고 그와 상반되는 동 증인등의 원심법정에서의 번복진술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, 원심법정에서의 번복진술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이고 증인 허만옥은 별도사건으로 피고인 소속의 경찰서의 취소를 받아 온 처지로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의곡된 진술을 한 것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믿고 무죄선고를 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므로 알건대, 증인 허만옥과 임임남은 원당심공정에서 검사작성의 동인등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바 그 검찰조서와 동 증인등의 원심법정과 당법정에서의 법정증언내용과의 신빙성을 대비 고찰컨대, 검찰조서 내용은 공소사실에 부합되며 그 사건의 선거일과의 일시관계, 범행의 과정, 그 수단, 방법등 범죄의 정황이 법정증언보다 경험칙에 비춰 합리적이고, 특히 피고인은 본건으로 직위해제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면서도 이에 불복하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

지 은연 자약하고 있는 점과 증인 허만옥이 본건과 병행하여 피고인 소속의 순천경찰서로부터 별도 횡령 피의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고 온 처지등을 고려하며는 검찰조서와 상반되는 법정증언부분은 피고인의 면전인 고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은 나머지 임의성없이 증언한 것이라고 인정되어 그 상위된 부분은 검찰조서가 법정증언보다 신빙성에 대한 정황적 보장이 확실하여 증거가치나 능력에 있어 법정증언보다 우월하다 아니 할 수 없다.

그렇다며는 원심으로서는 그 상위되는 부분에 관해서 법정증언을 배척하고 검찰조서내용을 취신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해야 마땅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검찰조서를 배척하고 법정증언을 취신한 나머지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 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있다.

따라서 당원은 형사소송법 364조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.

피고인은 순천경찰서 해룡지서장으로 종사하면서 1967.6.8.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기간중 동월 7. 17:30경 승주군 해룡면 원전리 소재 해룡지서내에서 평소부터 신민당 계열로 지목되어 오던 동리 허만옥을 불러 마침 동인과 같이 왔던 동인의 처 임임남의 면전에서 허만옥에 대한 농우횡령사건에 관한 취조를 하면서 임임남이 철도용 실습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신민당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내라고 하여서 없다고 하자 부하 성명미상 순경을시켜 치마 끝을 풀러 동인의 몸 수색을 시키고 그 때부터 약 세시간 동안 하등 정당한 이유없이 머물게 하면서 신민당 돈을 얼마나 받았냐, 신민당 책자를 가지고 다니면은 아니된다는 등 경찰관 직권을 남용하여 신민당 지지자에게 위포심을 주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이다.

증거를 살피건대, 판시소위는 1.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진술내용 1. 검사작성의 증인 허만옥, 임임남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진술기재 부분을 1. 위 증인등의 원ㆍ당심공정에서의 증언중 위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증언부분을 종합하면은 증거 충분하다.

법률에 비추건대,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국회의원선거법 151조에 해당한 바,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을 벌금 10,000원에 처하고, 형법 69조, 70조에 의하여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돈 2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다.

이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동욱(재판장) 판사 김재주 판사 이석범